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 .

발 의 자 : 맹성규 · 박균택 · 정준호  
박 정 · 문진석 · 박홍배  
김남희 · 복기왕 · 황명선  
윤종균 · 황정아 · 허 영  
정태호 · 손명수 · 김영호  
박지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·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.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.

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,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·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,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,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등).



##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기금의 계정 구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·관리한다.

1. 남북협력계정
2. 평화·번영계정

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금”을 각각 “남북협력계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평화·번영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3.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
4. 평화·번영계정의 운용수익금

5. 제1항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남북협력계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기금”을 “남북협력계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평화·번영계정의로의 전출금

② 평화·번영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

2. 평화·번영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③ 평화·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매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평화·번영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.

⑤ 평화·번영계정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제8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(생략)

8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금

5. 제1항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8조(기금의 용도) ① 남북협력계정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평화·번영계정의로의 전출금

7. (현행과 같음)

8. 남북협력계정-----

② 평화·번영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

2. 평화·번영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③ 평화·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매년 제4조제

<신 설>

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 
의 100분의 50을 평화·번영계  
정에 적립하여야 한다.

⑤ 평화·번영계정 기금의 결  
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  
액 적립하여야 한다.